

##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경영혁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25.1.7.)됨에 따라 시행령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제재처분 등 감독상 조치의 전문성 강화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를 도입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대의원 선거 운동방법 규정 정비(안 별표1)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에 따라 대의원 선거도 임원선거와 동일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정비함

나. 직원에 대한 직접제재처분 대상 규정 정비(안 제11조의3)

직접제재처분 직원 대상 범위를 임원과 시행령('25.7.8. 시행예정) 제47조의7(직원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원으로 정비함

다. 제재심의회(자문기구) 도입(안 제11조의5)

제재처분 등 감독상 조치의 전문성 강화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 도입함

라. 제재처분, 행정처분 기관 적용범위 정비(안 제11조의3, 별표1의2, 별표2)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설립으로 동법 시행규칙 내 적용범위 정비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각각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임원”을 “임원과 영 제47조의7 각 호에 따른 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금고 또는 중앙회”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원”을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직원”으로, “임원과 금고 또는 중앙회”를 “임직원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각각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로 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제재심의회) ①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및 제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행정안전부에 제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74조·제74조의2·제74조의3에 따른 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 법 제8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2명
  2. 회장이 추천하는 중앙회 이사인 금고 이사장 1명
  3. 금융·법률·회계·감사·재정 또는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 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회계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에서 인사·감사·회계·재정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 중 1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할 때
3.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⑦ 위촉위원은 제6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이 제재와 관계되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및 2) 중 “임원 선거”를 각각 “선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임원”을 “금고 또는 중앙회”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금고(금고 임원 선거로 한정한다) 또는 중앙회(중앙회 임원 선거로 한정한다)가 부담한다”를 “금고 또는 중앙회가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중 “임원 선거”를 각각 “선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3) 중 “금고(금고의 임원 선거로 한정한다) 또는 중앙회(중앙회장 선거로 한정한다)”를 “금고 또는 중앙회”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 위반행위란 제1호 중 “금고나 중앙회”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 위반행위란 나목 중 “금고 또는 중앙회”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위반행위란 제4호 중 “금고나 중앙회”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 및 3) 중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각각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 다) 및 같은 호 다목1) 중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각각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의3(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① <u>금고 또는 중앙회</u> 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재처분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제재처분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1조의3(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① <u>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u>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u>금고 또는 중앙회</u> 가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요구 내용과 다르게 제재처분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요구 내용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u>금고 또는 중앙회</u> 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제재처분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 <u>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u>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u>금고 또는 중앙회</u> 가 제2항 전단의 요구 내용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하                                                                                                                                                                 | ③ ----- <u>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u> -----                   |

지 않거나 그 요구 내용과 다르게 제재처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직접 제재처분 조치(임원만 해당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고 또는 중앙회는 전단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 내용과 다른 제재처분 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 조치를 하는 경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제재처분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임원과 금고 또는 중앙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금고 또는 중앙회는 해당 제재처분 사실을 인사관계 서류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또는 중앙회 임직원의 제재처분 조치에 필요한 세부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임원과  
영 제47조의7 각 호에 따른 직원-----  
--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  
-----  
④ -----  
-----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직원-----  
-----  
-----  
----- 임직원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  
⑤ -----  
-----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  
-----  
-----  
---

<신 설>

제11조의5(제재심의회) ① 금고, 중양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및 제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행정안전부에 제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74조·제74조의2·제74조의3에 따른 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 법 제8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2명
2. 회장이 추천하는 중양회 이사인 금고 이사장 1명
3. 금융·법률·회계·감사·재정 또는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현

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회계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에서 인사·감사·회계·재정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 중 1명을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  
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결  
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지 아니할 때

2. 심의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할 때

3.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  
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

당하다고 인정될 때

⑦ 위촉위원은 제6항에 따른 임  
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  
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이 제재와 관  
계되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임직원 또  
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  
거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  
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 개 정 안 (별표1 개정안)

선거운동 방법 세부사항(제5조의2제1항 관련)

### 1. 선거공보의 제작 및 배부

#### 가.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선거공보의 배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3조의2에 따라 임원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1) 선거공보의 규격 및 매수

가) 크기: 길이 29.7센티미터, 너비 21센티미터 이내

나) 매수: 1매(중앙회장 선거는 4매 이내). 이 경우 선거공보의 내용을 양면에 모두 작성할 수 있다.

다) 무게: 제곱미터당 100그램 이내

라) 색도: 제한 없음

##### 2) 선거공보 게재사항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학력·주요경력 및 선거공약만 게재한다. 이 경우 학력 게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에 따른다.

#### 나. 제출된 선거공보의 발송

위원회는 제출된 선거공보를 확인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거공보의 규격에 맞지 않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발송하지 않는다.

1) **금고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5일까지

2) **중앙회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 다. 그 밖의 사항

1) 후보자는 제출한 선거공보를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사항을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공보에 관한 사항을 사전

에 검토받도록 안내할 수 있으며, 그 검토 결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이유를 제시한 후 수정하여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공보의 수량 및 제출마감시간을 선거일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4)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라. **금고 또는 중앙회**(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제외한다) 선거에 관한 특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사진 및 선거공보 전산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하게 한 후 각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 전산원고의 제출마감시간은 선거일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며,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금고 또는 중앙회**가 부담한다.

1) **금고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5일까지

2) **중앙회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 2.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 가. 개최 일시·장소의 지정 및 공고

1) 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와 협의하여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한 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1회 개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개최일 전 2일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한다.

#### 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진행 방법

1)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순서는 연설당일 추첨에 따라 결정하고, 연설시간은 후보자별 10분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설순서 추첨시작까지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연설순서를 추첨할 수 있다.

2) 공개토론회는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금고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거나 사회자를 통하여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 및 답변의 횟수와 시간을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해야 한다.

#### 다.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관리

1) 후보자가 합동연설회의 본인연설 순서시작까지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시시작까

지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연설 또는 토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가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후보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연설이나 발언을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이에 불응할 때에는 연설이나 발언의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가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에서 연설이나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가.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방법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다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문자메시지는 제외한다)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선거운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2)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선거운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3) **금고 또는 중앙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또는 대화방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4) 전자우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나.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관리

1) 위원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가목3)에 따른 금고 또는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또는 대화방에 게시된 경우 그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1)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후보자는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2)에 따라 이의 제기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의 제기 기간을 경과한 이의에 대해서는 각하한다.

나)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1)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를 제기한 후보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다)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의를 기각하고 이의를 제기한 후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4) 가목2)에 따른 문자메시지 및 같은 목4)에 따른 전자우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에 따른다.

4.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가.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기간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해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나. 명함 게재사항 및 규격 등

1) 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이 경우 학력 게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에 따른다.

2) 명함의 규격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3) 명함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개 정 안 (별표1의2 개정안)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의2제1항 관련)

| 위반행위                                                     | 구분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                                          |                      |
|----------------------------------------------------------|----|-----------------------|--------------------------------------------|------------------------------------------|----------------------|
|                                                          |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
|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임원 | 해임 또는 직무정지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                                                          | 직원 | 징계면직 또는 정직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 임원 | 해임 또는 직무정지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                                                          | 직원 | 징계면직 또는 정직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3.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                       |                                            |                                          |                      |
| 가. 업무와 관련한 횡령, 배임, 절도,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 임원 | 해임                    | 해임 또는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                                                          | 직원 | 징계면직                  | 징계면직 또는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    |            |            |            |              |
|-----------------------------------|----|------------|------------|------------|--------------|
| 나.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임원 | 해임 또는 직무정지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                                   | 직원 | 징계면직 또는 정직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다.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임원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경고           |
|                                   | 직원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라. 감독기관 등의 감독 또는 검사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임원 | 해임 또는 직무정지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                                   | 직원 | 징계면직 또는 정직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마. 직무태만 행위                        | 임원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경고           |
|                                   | 직원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임원 | 해임 또는 직무정지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                                   | 직원 | 징계면직 또는 정직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사. 겸직금지 위반 행위                     | 임원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주의           |
| 아. 내부통제기준 위반 행위(중앙회만 해당한다)        | 임원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경고           |
|                                   | 직원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    |            |            |            |              |
|---------------------------------------------------------|----|------------|------------|------------|--------------|
| 4.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금고, 중양회 또는 관리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임원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 경고           |
|                                                         | 직원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5. 그 밖에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임원 | 해임 또는 직무정지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                                                         | 직원 | 정계면직 또는 정직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개 정 안 (별표2 개정안)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의4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 1) 금고, 중양회 또는 관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 2)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보전한 경우
- 3) 금고, 중양회 또는 관리회사가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 2. 개별기준

가.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금고, 중양회 또는 관리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 나)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하여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 다) 금고, 중양회 또는 관리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법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아 행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인가·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승인 등을 받아 그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

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위법·부당한 상태를 방치하고 있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경고 또는 주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위반행위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경영관행 등에서 비롯된 경우
- 2) 위반행위를 한 동기·내용 등에 비추어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